

의안번호	2210443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5.8.1.
추 계 번호	25D2794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“수사처”라 함)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「형법」 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고위공직자의 내란 및 외환의 죄를 포함 (안 제2조)

- 현행법은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 중 제2조제3호1)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

-
- 1)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고위공직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(職)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.
- 가. 대통령
 - 나.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
 - 다. 대법원장 및 대법관
 - 라.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
 - 마.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
 - 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
 - 사.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
 - 아. 대통령비서실·국가안보실·대통령경호처·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
 - 자. 국회사무처, 국회도서관, 국회예산정책처,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
 - 차. 대법원장비서실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
 - 카. 검찰총장
 - 타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
 - 파. 판사 및 검사
 - 하.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
 - 거. 장성급 장교
 - 너. 금융감독원 원장·부원장·감사
 - 더. 감사원·국세청·공정거래위원회·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

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수사 대상 범죄에 「형법」 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추가하여 수사 대상 증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□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수사 대상 범죄의 건수와 수사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

□ 참고로 2025년 기준 수사처 예산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내역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인건비	기본경비	사업비			정보화	합계
		수사지원	공판활동	소계		
8,659	4,506	1,430	30	1,460	10,643	25,268

자료: 수사처의 제출자료와 사업설명자료(Ⅱ-1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2. "가족"이란 배우자,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 다만,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.
3. "고위공직자범죄"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다만,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
 - 가. 「형법」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- 나. 직무와 관련되는 「형법」 제141조, 제225조, 제227조, 제227조의2, 제229조(제225조,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)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- 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죄
 - 라. 「변호사법」 제111조의 죄
 - 마. 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의 죄
 - 바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죄
 - 사.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의 죄
 - 아.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